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휘영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 제26조 제4항(등록요건 정기점검 의무 신설) 및 제33조 제1항 제2의2호(등록요건 미충족 시 등록취소 근거 신설)의 2026년 11월 20일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[별표 1](행정처분의 기준)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준수 여부 확인 관련 정기점검 방법·

절차 신설(안 제6조의2)

나. [별표 1]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및 정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전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등록요건의 정기점검)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서면점검,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하며, 효율적인 정기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대상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점검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.

1.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
2. 자료 제출의 범위
3.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의 기간·이유·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

⑤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,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별표 1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 추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33조제1항제2 의2호	등록 취소			
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	--	--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등록요건의 정기점검)</u> <u>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기 점검은 서면점검,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하며, 효율적인 정기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.</u> <u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대상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점검할 수 있다.</u> <u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.</u> <u>1.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</u> <u>2. 자료 제출의 범위</u> <u>3.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</u> <u>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 까지 점검의 기간 · 이유 · 내용</u>

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, 조사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298